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

【제정 2018. 1. 15.】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징수관"이란 각종 수입금에 대한 조사 결정 및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.
- 2. "재무관"이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.
- 3. "지출원"이란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지출의사를 결정하고 지급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.
- 4. "현금출납원"이란 지급명령에 따라 현금을 출납하는 직위를 말한다.
- 5. "분임직"이란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자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.
- 6. "수입금출납원"이란 임대료, 광고료, 주차료 등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직위를 말한다.
- 7. "일상경비출납원"이란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직위를 말한다.
- 제3조(회계업무취급자의 직위지정) 「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」(이하 "회계규정"이라 한다) 제8조제4항에 따라 회계업무 취급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 - 1. 징수관 상임이사(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)
 - 2. 재무관 상임이사(상임이사 궐위 시 관리부장)
 - 3. 분임재무관 경영지원팀장, 각 팀장(일상경비)
 - 4. 지출원 경원지원팀장
 - 5. 수입금출납원 각 팀장
 - 6. 일상경비출납원 각 팀장

- 제4조(재무관의 직무위임)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.
 - 1. 예정금액이 2,000만원 이하인 공사, 2,000만원 이하인 제조,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사항
 - 2. 급여 등 인건비, 여비, 복리후생비, 업무추진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따른 의무적인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
- 제5조(회계담당) 회계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회계담당(이하 "담당"이라 한다)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제6조(회계단위) 회계규정 제6조제1항의 총계정원장 설치팀은 본부 및 독립회계단위 사업팀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, 각 회계단위별로 독립회계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독립회계단위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7조(전표의 기표) 전표의 기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- 1. 전표 및 회계결의서는 회계담당 부서에서 직접 기표한다.
 - 2. 회계전산화에 따른 회계결의서는 원본은 회계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기타부서는 사본으로 보관한다.
 - 3. 회계결의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,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전표에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계정과목을 분개형식으로 기입한다
 - 4. 전표작성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1매의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매 이상 작성할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일련번호를 정하여 작성한다.
 - 5. 회계결의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, 기타 기재상의 오류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.
- 제8조(회계결의서의 심사) 회계결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 - 1. 기재사항의 오류유무
 - 2. 결재의 누락 여부

- 3. 전표상의 대차금액 일치여부
- 4. 그 밖에 작성상 미비한 사항
- 제9조(회계장부의 생략) 회계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총계정원장, 분개장,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
 - 2. 그 밖에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비치를 생략하여도 다른 장표로 대용이 가능한 장부
- 제10조(일계표의 작성기준) 일계표는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1조(기재의 원칙) ① 보조부의 계좌,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.
 -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.
 -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.
 - ④ 정규란 이외에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장부의 마감요령)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- 1.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. 다만, 출납장을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출납장에 다른 출납장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.
 - 2. 총계정원장, 각 계정원장,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.
 - 3.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 - 4.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,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13조(장부폐쇄 및 갱신)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 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.

- 제14조(장부의 이월) ①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·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회계처리 감독처리자는 매월 장부기입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
- 제15조(회계결의서) 회계규정에 의한 회계결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- 제16조(반납결의서) 가지급금 정산을 위한 반납결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.
- 제17조(출납마감) ① 출납마감 시간은 업무종료 시간으로 한다.
 - ② 출납마감 후 매일 자금수지 및 시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금수지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마감후의 처리) ① 업무종료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및 관계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. ② 마감 후 거래는 익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.
- 제19조(예산의 전용·이용) 각 팀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·이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전용·이용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예비비사용) ① 각 팀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경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② 전항의 요구안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21조(결산) ① 회계규정 제148조제1항의 결산 총괄책임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.

- ② 해당 팀장은 결산 총괄책임자로부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지출 및 지급의 원칙)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지급명령의 발행요건)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(급여 등 집합지급은 제외한다)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인건비 등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
 - 2. 업무추진비, 정보비
 - 3.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
 - 4. 복리후생비
- 제24조(일상경비의 관리)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30만원 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5조(개산급의 정산)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여비, 업무추진비, 정보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6조(출납원의 수납)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과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있다.
- 제27조(징수보고서) 징수관은 수입원 발생시마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

다.

- 제28조(자금운용) 각종 운용자금은 시중 금융기간에 예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현금은 예외로 한다.
- 제29조(구매요구) 회계규정 제1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요구시에는 별 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.
- 제30조(계약의 체결) ① 계약은 재무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찰서 및 예정가격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.
 - ② 공단에 관한 계약서는 주관팀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공사내역서, 예정공정 등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이 되는 계약은 징수관 명의로 한다.
- 제31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) ① 물건의 제조·구매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 팀장으로부터 검수원 지정을 받은 직원이 행한다.
 - ② 공사,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에는 주관팀장이 지정한 검사 또는 검수자가 별지 제10호 서식, 별지 제11호 서식,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한다.
- 제32조(소액경비 집행에 관한 특례) 2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물품을 구입하 거나 수리하는 경우 납품검사원, 검사요구서 등을 생략하고, 지급결의서에 검사 및 납품조서와 영수증, 가격산출 조사서를 첨부하여 집행에 갈음할 수 있다.
- 제33조(계약방법의 명시) 주관팀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기본운영 계획,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당해사업의 성격, 규모,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입찰서의 사용) 입찰서는 일부인을 날인하고 담당자 및 경영지원팀장

- 이 확인 날인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35조(예정가격조서 작성) 계약담당자는 주관팀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36조(예정가격의 결정)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팀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 또는 계약팀에서 재확인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 서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제37조(설계도서 작성) 주관 팀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)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, 규격서, 내역서,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나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시설공사의 시행)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.
 - 1. 공사명
 - 2. 계약방법
 - 3. 입찰참가자격
 - 4. 준공기간
 - 5. 하자담보책임
 - 6. 예산과목
 - 7. 현장감독관
- 제40조(계약서의 부본송부)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41조(도급계약의 억제) ① 설계용역의 도급계약은 특정의 기술, 학술이나

- 특수한 경험과 창안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② 조사 측량 등 용역의 도급계약은 자체 직원으로서는 소정 기일 내에 성취할 수 없는 경우와 학술, 기술, 지식을 겸비한 자의 재분석을 요하는 경우에 의한다.
- 제42조(과업지시서 작성)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43조(첨부하는 증빙서류)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. 다만,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주무자가입증하는 사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- 제44조(회계문서의 날인)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인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규정)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집행된 모든 회계문건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수 입 결 의 서

NO

징 수 관			20	년도	회계	발 의	20 .			인
본 부 장			관			세금계산서 발 행 일 자	20 .			인
팀 장			항			입금기한	20 .			인
			세항			입금일자	20 .	٠	٠	인
담 당			목			징수부등기	20			
		<u>금</u>		원(금		원)				
입급은행	및 계좌									
납 부 주소성										
적	ÿ									

대 체 전 표

(차 변)

(대 변)

과	목	항	목	Ę	 1_ 1		액		과	목	항	목		그 ㅁ		액	
		합	계								합	계					
적	요																

지 출 결 의 서

NO

담	당	팀 장	재무	관	(20 h	견도 회	계)		담	당	지	출원
					대치	세과목							
발	의	20 .		인	관			발	의	20			인
원 인 부 등		20 .		인	항			지 출	를 부 기	20			인
계 납	약 품			인	목			회계	장부	20			인
(준	공)	20 .	• •	인	세목			등 지급	<u>기</u> 버ㅎ		제		호
검	수 	20 .	• •	인	,,,,			1 1			~ 11		
			Ĭ	<u>.</u>		원	(금		원)				
적	<u>\$</u>						거래은행 계좌번호						
채	주	주 소: 상 호:					성 명:			(인)			
පි	수	위 금액· 20 년	을 영수 월	함 일			성 명:			(인)			
적	요												

대 체 전 표

(차 변)

(대 변)

과	목	항	목		금		Ó	H		과	목	항	목		금	-		ģ	H	
		합	계									합	계							
적	요				1				•					•	•		·		·	1

반 납 결 의 서

주관

담 당	 팀 장	재무관	<u>}</u>	(2	0 년	크도	세	출)		담	 당	z	<u></u> 출원
				대체3	과목								
발 의	20 .		인	관				발	의	20			인
원 인 행 우 부 기 지			인	항 목				지 출 기	부 재	20			인
채무확정의			인	세목				지급명 기 <i>기</i>		20		•	인
			<u>금</u>		원	.(금		원)	-				
지출일자	20			인	고지	서발행		6 2	20 .				인
지급명령 번 호	7	테 호		인	납고	부기한		6	20 .				인
반납고지서 번 호	7	테 호		인	납	부 일		2	20 .				인
반납자	주 소: 상 호:					성 명 :	:		I	(인)			
반납사유								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예산전용·이용요구서

수 신:

(단위 : 천원)

	과 목		예산액	기	예산	금 후	요-	구액	사유
관	항	목	게신기	지출액	잔액	소요액	증	감	7 J J J

20 년 월 일

		팀장

※ 기재요령

- 1)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전용·이용·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.
- 2) 사유란에는 전용·이용·이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.

[별지 제5호 서식]

예비비지출요구서

수 신:

(단위 : 천원)

ũ	가 목	<u>I</u>	예산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후소요액	예비비 지출요구액	사 유
관	항	목		2	(1-2)	3	3-1-2	' ''
.11 - 511	1 -1 - 1	\ -P\ A -	1	٥				
예비비 	지줄을	살 필요!	로 하는 사	т́				
				20 년	월	일		
					_			팀장
예산역	업무담	당팀장	귀하					

※ 기재요령 :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

[별지 제6호 서식]

구입과지출결의서

증 제		ই										<	앞면>
계	팀	장	재	무관	C	연도 서	출		계			이출·	원
					세	출 과	목	_					
발	의			(인)	관			발	의		•	•	(인)
원인행위액	등기		•	(인)	क्रे			지출 통제	들예산 원장 기			•	(인)
주	문	•	•	(인)	0								
납	<u>고</u>	•	•	(인)	세항				¦지출 등 기				(인)
검	수		•	(인)				지급	구명령		•	•	(인)
채무확정액	등기		•	(인)	목			번	ই	7	제		Ì
	,		금	-				Ç	원				
				(금)			_		
				금		원		공급기	가 액		_		
				금		원	부기	가치시	세액		_		
본 계약에	있어	서 이민	<u></u> 기	재사항		년 주 :	월 소 명	Ç	<u>]</u>	((인)		
주민등록 번 호					업 자 ት번호			거 금융	래 기관				
상기 금액 성명	년	월	(인)			상	기 금 [©] 성	년	경수함 월	일 (인)		

주 :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.

구 입 물 품 명 세 서														
품	명	→ 7	격 단	위	수 량	단 가	금 액	비고						

승 낙 사 항

- 1.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,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.
- 2.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,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.
- 3.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· 견본 등과 다를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.
- 4.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.
- 5.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.

[별지 제7호 서식]

				o] 님	Ž	찰	서	
	공	고	번 호	제	ই	입 찰	일 자	
입 찰	건		명					
내 용	금		액	금		원7	정 (₩)
	준공((납품))년월일			법인]등록번호	
O] 님	상호!	또는법	인명칭			전	화 번 호	
찰	주		소					
자	대	丑	자			주민]등록번호	

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(물품구매·기술용역)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(물품구매·기술용용역)계약일반조건·계약특수조건·설계서(물품규격서)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(납품·용역수행)기한내에 공사(물품·용역)를 완성(제조·납품)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.

붙 임 : 산출내역서(고시금액이상 공사의 경우) 1부

입찰자: (인)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

입 찰 참 가 신 청 서

*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신 청	상호 또는 법인명칭		법인등록번호		
	주 소		전 화 번 호		
인	대 표 자		주민등록번호		
입찰	입찰공고번호	20 -	입 찰 일 자		
개요	입찰단위 :	등록번	<u>\$\bar{\bar{\bar{\bar{\bar{\bar{\bar{</u>		
입 찰 보 증 금	납 부	o 이행보증보험증권 또 계약보증금 지급각서			
대 리 인 사 용 인 감	본인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 성명: 주민등록번호:		본 입찰에 사용할 다음과 같이 신고 사용인감		

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위탁시설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제반 준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.

붙임서류 1. 주민등록등본 1통.

- 2.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에 한함) 1통.
- 3. 인감증명서 및 도장 1통.
- 4. 그 밖에 공고로써 정한 서류

20 . .

신청인: (인)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

예정가격조서

예정가격			
건 명			
	자		료
구 분	금	애	산 출 기 초
설 계 금 액			주관팀 설계서에 의하여
기 초 금 액			
			작 성 자:
위와 같이 예정가격을	늘 결정함		
	20 년	월	일
	재 드	(인)	

물품검사 조서

계 약 건 명				
	주 소			
납 품 자	상 호			(인)
	대 표 자			
계 약 금 액	일금		원정(₩)
계약체결년월일	20 년	월 일		
납 품 기 한	20 년	월 일		
납 품 년 월 일	20 년	월 일		
검사년월일	20 년	월 일		
검 사 장 소				
	상기와 같	이 검사하였음		
		20	년 월 일	
	검사자	소속		
		직	성명	(인)
		직	성명	(인)
	입회인	소속		
		직	성명	(인)
		직	성명	(인)

[별지 제10호 서식]

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

공 사 명				
계 약 자				
계 약 금 액	일금 원정			
기성부분금액	일금 원정			
계 약일자	년 월 일	준 공 기 한	년 월	일
착 공 일 자	년 월 일	기성부분검사	년 월	일
	o 전회까지의 기성 ^년	부분액	액	
비 고	ㅇ 금 회 기 성 부		액	
	ㅇ 계		액	
増え]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	부건사를 피하연으		
고^`				
		년 월	일	
검사	자 소속 직	성명	(인)	
입회	자 소속 직	성명	(인)	

[별지 제11호 서식]

준 공 검 사 원

○ 공 사 명:

○ 계 약 금 액 :

○ 착공 연월일 : 20 년 월 일

○ 준공 연월일 : 20 년 월 일

		현	장	감	독	확	인		
소	속								
직	위								
성	명								

위 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○ 주 소:

○ 상 호:

○ 대표자 성 명 :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

준 공 검 사 조 서

공 사 명								
계 약 자								
계 약 금 액	일금	원정	ลี	을 공 금 액	일금			원정
계 약 일 자	년	월 (준 공 기 한		년	월	일
착 공 일 자	년	월 (1	준 공 일 자		년	월	일
준공검사일자	년	월 (]			년	월	일
참 고 사 항								
별지 설계서 및	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.							
			년	월	일			
검 사 원	소속	직		성명		('	인)	
입 회 자	소속	직		성명		('	인)	
첨 부	공사설계서	및 도면 2	각 1부					